

나라밖



소식

여성의 출산휴가권 향상 추세

휴가기간도 평균 12~14 주로 연장

[빈=‘세계의 노동’지] 오스트리아의 빈에서 개최된 ‘사회보장의 남녀평등대우’란 주제의 연구회에서 발표된 국제사회보장협회(ISSA)의 보고서는 최근 일부 국가에서 모성보호의 적용범위가 확대되고 산휴기간이 연장되었으며, 남성노동자에게도 육아휴가가 허용되고 있다고 밝혔다.

이 보고서에 따르면 출산휴가권은 다음의 두가지 점에서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.

첫째로 고용의 권리·선임권·노령연금권의 보장이며, 둘째로 휴가중 또는 휴가전의 현금지급이다.

법제상의 개선책으로는 적용범위가 확대됐다는 점을 들 수 있

다. 75년 이후 산전산후의 휴가 임금노동자가 아닌 경우에도 적용되기 시작했다(아일랜드 프랑

스 오스트리아 그리스 모로코). 남미국가들 대부분이 농업노동자에게, 스웨덴에서는 가정의 여성

에게까지도 보호가 확대, 미혼모·미취직여성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. 산휴기간도 연장되어 평균 12~14주가 일반화되고 있다. 급여액도 증가, 대부분의 나라가 50%~100%로 질병급여액보다 높은 수준이다.

한편 산휴를 법률로 강제하는 경우, 여성채용을 기피할 것에 대비, 휴가일수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조정하는 등 입법을 유연하게 하는 나라들이 생겨나고 있다(서독 오스트리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).

이밖에 육아휴가를 남자노동자에게도 인정하는 나라는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등이다. 이 제도는 남녀가 가정에 대한 책임을 분담한다는 사고에 근거한 것이다.

일본전기노련, 춘투개가 육아휴직제 대부분 쟁취

[동경=주간노동뉴스 등 외신종합] 일본전기노련(조합원 67만·신연합가맹)의 대기업노조가 올 춘투에서 공동으로 요구한 1년간의 육아휴직제도는 3월30일까지의 교섭결과 대기업 17개사 가운데 이미 실시중인 2사를 포함, 15개사에서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. 또 12개 노조에서는 휴직중의 사회보험도 개인부담에서 회사부담으로 전환시킬 전망이다. 이에 따라 휴직중에 지불되는 후생연금 등 사회보험료의 개인부담(월별 표준보수액의 평균10%)은 12개사에서 개인부담액의 상당분을 회사가 일시분(보너스)과 임금 등의 방식으로 별도지급할 것이 거의 확실시된다.